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서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청산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고 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2항, 제115조제3항 또는 제115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1부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